

장암 더샵 계약 안내문



□ 일정 및 장소

- 일시 : 2017.08.02(수)~08.04(금) [3일간 10:00~16:00] / 장소 : 당사 견본주택 [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80]

구분	금융기관명	납부계좌	예금주	계약금 (1차)
계약금	하나은행	375-910028-61304	장암생활권 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주)포스코건설	일천만원 (₩10,000,000원)

- *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,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(현금 또는 수표) 수납은 불가함.
- * 상기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.
- * 상기 계약금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, 반드시 **입금인란에 동호수, 계약자명을 기재하시기 바람. 예시) 1010301홍길동**

□ 발코니 확장 계약금 및 납부계좌 안내

■ 발코니 확장 계약금 (공통 / 계약금 비율 10%)

(단위: 원)

타입	59	84A	84B	84C	84D	84E	99
계약금	980,000	1,250,000	1,180,000	1,180,000	1,180,000	1,180,000	1,280,000

■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 및 방법

구분	금융기관명	납부계좌	예금주
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	하나은행	375-910028-60704	(주)포스코건설

- *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, 공동 분양대금 입금 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.
- *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무통장 입금 영수증을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,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(현금 또는 수표) 수납은 불가함.
- * 입금 시 반드시 **입금인란에 동호수, 계약자명을 기재하시기 바람. 예시) 1010301홍길동**

□ 구비서류 안내

구분	서류유형		구비서류
	필수	추가(해당자)	
공통 (특별공급 당첨자포함)	○		• 본인확인증표 (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)
	○		•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(용도 공동주택 계약용) 1통
	○		• 주민등록등본 (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통 포함)
	○		• 주민등록초본 (주소 변동 내역을 포함하여 발급)
	○		• 계약금 무통장 입금 영수증
특별공급		○	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 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부) •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)
	일반, 다자녀, 노부모	○	• 본인 (배우자 포함)의 직계존속의 주민등록 초본 (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3세대 구성 배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)
		○	•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)
	신혼 부부	○	• 피 부양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(피 부양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)
		○	• 혼인관계증명서
		○	• 자녀의 기본증명서 (혼인기간 중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)
		○	•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
		○	• 임신증명서류 (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)
		○	• 출산이행 확인각서
		○	• 가족관계증명서 (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)
○		• 비사업자 확인각서	
○	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(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생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제출)		
일반공급 (가점제)	○		• 소득증빙 서류 :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(주민등록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·비속 포함)
	○		• 가족관계증명서 (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)
	○		• 직계존비속의 주민등록표초본 (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)
	○		• 혼인관계증명서 (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)
부적격당첨 통보자	○		• 군복무기간(10년 이상)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1부 • 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 1부 -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군인으로 입주자저축에 1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공급을 받으려는 자 (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신청 시)
	○		•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(가옥대장등본 포함)
	○		•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
	○		• 소형/자기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(주택공사가격 증명원 등)
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사항	○		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
	○		•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
	○		• 계약자의 인감도장
		○	•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

- * 상기 제 증명서류는 **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(2017.07.13)이후 발행분**에 한하며,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(단,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외국인인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)
- * **주민등록표 등·초본 발급 시**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 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반드시 **"주민등록번호",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 및 "주소변동이력" 이 표기 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**